

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(제7조 관련)

심사항목	심 사 요 소	배점 기준	배 점 요 령
1. 하도급가격의 적정성(50)	가.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○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	30	$30-2\left(\frac{82}{100}-\frac{\text{하도급금액}}{\text{원도급금액}}\right)\times 100$
	나.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○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	20	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$20-1/2\left(\frac{88}{100}-\frac{\text{원도급금액}}{\text{예정가격}}\right)\times 100$ ※ 88%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$20-1/2\left(\frac{75}{100}-\frac{\text{원도급금액}}{\text{예정가격}}\right)\times 100$ ※ 75%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$20-1/2\left(\frac{90}{100}-\frac{\text{원도급금액}}{\text{추정금액}}\right)\times 100$ ※ 90%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$20-1/2\left(\frac{86}{100}-\frac{\text{원도급금액}}{\text{추정금액}}\right)\times 100$ ※ 86% 이상은 만점으로 함
2.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(20)	가.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○ 3배 이상 ○ 2.5배 이상 3배 미만 ○ 2배 이상 2.5배 미만 ○ 1.5배 이상 2배 미만 ○ 1배 이상 1.5배 미만 ○ 1배 미만	10 (10) (9) (8) (7) (6) (5)	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
	나.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 및 수행 경험 ○ 2배 이상 ○ 1.5배 이상 2배 미만 ○ 1배 이상 1.5배 미만 ○ 0.5배 이상 1배 미만 ○ 0.5배 미만	10 (10) (9) (8) (7) (6)	
3. 하수급인의	가. 소방시설업 경영기간	15	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

심사항목	심 사 요 소	배점 기준	배 점 요 령
신뢰도(15)	○ 10년 이상 ○ 5년 이상 10년 미만 ○ 3년 이상 5년 미만 ○ 2년 이상 3년 미만 ○ 1년 이상 2년 미만 ○ 1년 미만	(15) (14) (13) (12) (11) (10)	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
	나. 임금체불이력	(△)5	감점
	다.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(△)5	감점
	라.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(△)3	감점
4. 하도급공사의 여건(15)	가.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○ 낮음 ○ 보통 ○ 높음	5 (5) (4) (3)	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,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
	나.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○ 1년 이상 ○ 1년 미만	4 (4) (3)	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
	다.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○ 2년인 소방시설 ○ 3년인 소방시설	5 (5) (4)	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
	라.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·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(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)·군 또는 인접 시·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	1	

비고

1. 위 표에서 시공 및 수행 실적 인정방법은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.
2. 위 표에서 소숫점 이하의 처리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3. 위 표에서 임금체불이력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한다.